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374
------	------

2025. 3.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김혜영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2.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혜영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홍보대사의 경우 일부 홍보대사들은 뚜렷한 홍보 성과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서울시 홍보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애용의 조항 신설(안 제3조 제4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개정안의 개요

-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홍보대사가 뚜렷한 실적 없이도 관행적으로 연임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에 대한 홍보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임기 연장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성적인 홍보대사 연임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음.

(2) 홍보대사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음.
- 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¹⁾ 동안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1) 제3조(위촉)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현황(2025.2.) >

연번	성명	전문분야	최초위촉	연임여부(횟수)
1	강주배	만화작가	2007년	연임(8)
2	길용우	배우	2023년	초임
3	김미화	방송인	2007년	연임(8)
4	김소영	아나운서	2023년	초임
5	김용명	방송인	2023년	초임
6	김태균	방송인	2017년	연임(3)
7	노주현	배우	2023년	초임
8	뉴진스	가수	2023년	초임
9	다니엘 린데만	방송인	2017년	연임(3)
10	박지호	기획가	2018년	연임(3)
11	박진희	배우	2018년	연임(3)
12	션	가수	2023년	초임
13	송지오	패션디자이너	2018년	연임(3)
14	슈카	경제전문 유튜버	2023년	초임
15	알베르토 몬디	방송인	2017년	연임(3)
16	양재진	정신과 의사 유튜버	2023년	초임
17	양태오	인테리어 디자이너	2018년	연임(3)
18	오상진	아나운서	2023년	초임
19	온오빠	틱톡커	2023년	초임
20	유현준	건축가	2018년	연임(3)
21	이석훈	가수	2023년	초임
22	이영지	가수	2021년	연임(1)
23	장윤주	모델	2017년	연임(3)
24	정샘물	메이크업 아티스트	2018년	연임(3)
25	제이슨	방송인	2019년	연임(2)
26	조수미	음악가	2019년	연임(2)
27	최불암	배우	1998년	연임(14)
28	홍현희	방송인	2019년	연임(2)

※ 동 조례 제정('10.4.) 이전 위촉된 홍보대사의 연임 횟수는 2년 임기 기준으로 산출

(3) 홍보대사 연임 현황

- 최근 5년간 홍보대사 현황을 살펴보면,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원은 총 52명으로, 이 중 2025년 2월 현재 임기 만료가 도래한 41명 가운데 2명(4.9%)만이 한 차례도 연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2020-2025.2.) 홍보대사 연임 현황 >

연임 횟수	연임 미대상 (임기 만료 미도래)	연임 대상(임기 만료 도래)				합계
		0회	1회	2회	3회 이상	
인원	11명	2명	5명	17명	17명	52명

※ 연임 미대상(임기 만료 미도래)에 임기 만료 전 해촉된 인원 1명 포함

- 게다가, 52명의 홍보대사 중에는 최근 5년간 활동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임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활동 실적이 상당했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경우도 있어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연임의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실제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제도는 별도의 방침없이 운영되고 있어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연임에 관하여 주관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실정임.

(4) 개정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동 개정안은 홍보대사의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관례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실적이 발생하는 홍보대사의 활동 특성상 홍보대사의 적극성과는 무관하게 홍보 실적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절대적인 연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또한, 무보수 명예직인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추진되거나 민간에 비해 적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피평가자인 홍보대사와의 협력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동 개정안은 홍보대사의 성과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의무화하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따라서 서울시는 홍보대사들이 활동함에 있어 부정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 궁극적으로, 홍보대사 제도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아니라 서울시가 홍보대사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들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홍보대사 운영의 책임 주체는 서울시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7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김혜영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상욱,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56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홍보대사의 경우 일부 홍보대사들은 뚜렷한 홍보 성과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서울시 홍보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신설(안 제3조 제4항)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조(위촉) ① ~ ③ (현행과 같 음) <u>④ 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 영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¹⁾의 소지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문의²⁾하였으나 현재로선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사항] 구체적인 홍보대사 연임 결정 기준, 홍보대사 보수 지급 기준 수립요구가 있었던 만큼 서울시 관련부서(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에서 개선사항을 검토
2) 문의결과 실적 및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한 내부검토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비용수반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예외적으로 소규모 용역을 통한 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